

#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2. 5. 15

내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2. 4. 14
- 나.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92. 5. 12
- 라. 상정일자 : '92. 5. 13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대표위원(구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구청장으로부터 복수추천 받은자를 구의회에서 선임하였으나 앞으로는 검사위원 3명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되 다만, 위원중 1인을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증액하여 보다 효율적인 결산검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위원 전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 1인에 한하여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검사위원 일비를 현행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토록 규정하였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사위원 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규정 한것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볼때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토론요지

### 1. 원안 가결안

#### 가. 찬성

위원 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찬성자 : 류광현 위원외 4명

나. 반 대

위원 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한 규정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비가 현실성이 없어 위원 선임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보류 또는 종전 규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함.

반대자 : 최학득 위원외 1명

2.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안

찬성자 : 시희준 위원외 1명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첨 부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외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 제2항은 삭제하고, “제3조 제5항”은 “제3조 제4항”으로 하며 제3조 제1항 내지 3항은 다음  
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하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제2호) 중 일비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2조(위원의 정수)위원의 정수는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내로 한다</p>	<p>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p> <p>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구청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p> <p>④ 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자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p> <p>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p> <p>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p>

현행	개정 (안)												
<p>⑤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 제2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여비</td> <td>국내여비 규정 “별표2” 여비지급 구분표상 부구청장 상당액</td> </tr> </tbody> </table>	구분	액 수	일비	20,000원	여비	국내여비 규정 “별표2” 여비지급 구분표상 부구청장 상당액	<p>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 제2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여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분	액 수	일비	30,000원	여비	(현행과 같음)
구분	액 수												
일비	20,000원												
여비	국내여비 규정 “별표2” 여비지급 구분표상 부구청장 상당액												
구분	액 수												
일비	30,000원												
여비	(현행과 같음)												